

# 법률자문 규정

제정 2021.04.08. 규정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법률적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운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기의 재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위촉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이라 함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업무 또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로부터 받는 도움을 말한다.
2. “자문관”이라 함은 상시 재단의 요청에 따라 법률자문에 응하는 자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해당 법무업무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라 함은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해당 법무 업무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자문 및 업무대행자 업무)** 이 규정에 의하여 자문 및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대표이사가 위임한 재단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어 대표이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자문관 등의 위촉)** 자문관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2. 법무업무 전문가(법무사 자격자)

**제5조(자문관 등의 임기)** 자문관 및 업무대행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대표이사는 자문관 및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수당)** ①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문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한 자문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경우
- ③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경우
- ④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의 합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 ⑤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실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임료)** ① 법률자문관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각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변호비용의 지원)** ① 대표이사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개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법률자문관 또는 외부변호사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임직원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된 변호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은 전액을 민사소송은 과실비율에 따라 해당 임직원 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변호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시기·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자문관 등의 활용)**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자문관 및 업무대행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대표이사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요청한 자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 사 · 행 정 소 송	1. 본안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금액</li> <li>· 다만, 위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2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 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150</li> <li>·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li> <li>· 화해의 성립인낙, 소취하(쌍방취하 포함)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 (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서</li> <li>· 소가증명원</li> <li>· 판결문(결정문)</li> <li>· 확정증명원</li> <li>· 소취하증명원</li> <li>· 기타 해당 서류</li> </ul>
	2.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본안사건 승소사례금의 100분의 50	상 동
	3.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본안사건 승소사례금의 100분의 50	상 동
기 타	1·2·3의 경우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치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변론 전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 타 소 송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대 : 실액</li> <li>· 송달료 : 실액</li> <li>· 검증비 : 실액</li> <li>· 감정료 : 실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서</li> <li>· 인지보증 증명서</li> <li>· 송달료·검증비·감정료 등은 납부 명령서 또는 입증자료 사본</li> </ul>

## 자문실적 기록부

구분 연번	제 명 (담당부서)	의 료 종 류	의 료 내 용	자 문 내 용
		의 료 연월일		

※ 비 고

가. “제명”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나. “의뢰종류”는 서면의뢰,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20 년도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